

2005 주요업무보고

2005. 3



건 설 교 통 국

〈 보고 순서 〉

● 일반 현황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치수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조직 : 5과 22팀
- 직원현황

구분	계	건설관리과	토 목 과	치 수 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정원	192	29	39	37	36	51
현원	234	50	37	38	35	74
과족	+42	+21	-2	+1	-1	+23

□ 각종 위원회 현황

주 관 과	위원회명	위 원 장	위 원 수	운 영 내 용
건설관리과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 국 교통장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	광고물(안)심의
토 목 과	기술자문위원회	부구청장	공무원 2명 민간인 12명	공사설계 등 전문기술자문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공무원 6명 민간인 10명	도로굴착관련 사전심의
	보상협의회	부구청장	공무원 8명 민간인 2명	보상업무와관련 전반적자문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조정 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 국 교통장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	교통개선 조정 등 전반적 자문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부구청장	공무원 10명 민간인 3명	교통안전대책 자문 등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	부구청장	공무원 10명 민간인 5명	주차장부지선정 자문 등
교통지도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 국 교통장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	교통민원신고 조정심의 등

□ 공공용지 점용현황 : 2,547건 55,669㎡ ----- (건설관리과)

- 도 로 : 2,369건 51,209㎡
- 하 천 : 39건 1,425㎡
- 구 거 : 139건 3,035㎡

□ 가로시설물 현황 : 1,243개소(가로판매대, 통합배포대 등)

□ 광고물관리 현황 : 10,853개소(옥상, 지주, 돌출, 가로형 등)

도로시설물 현황 -----(토 목 과)

- 도 로 : 385,999km(도로율 23.11%)
- 시설물 : 35개소(교량 4, 고가차도 6, 보도육교 10, 지하차도 8, 지하보도 3, 입체교차로 4)
- 간선도로 : 27개노선 73.95km

하수도시설 현황 -----(치 수 과)

- 하수관거:440,652m 맨홀:8,589개소 빗물받이:20,982개소
- 빗물펌프장 : 8개소(영등포, 양평1,2, 문래, 도림2, 신길, 대림2,3)
- 수 문 : 20개소 45문
- 하천 현황 : 4 개소 16.94km

구 분	한 강	안 양 천	도 립 천	대 방 천
폭원(m)	1,100	300	120 ~ 180	30 ~ 50
길이(km)	5.4	4.8	4.04	2.7

* 한강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

지하수관정 : 452개소(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

자동차관련 현황 -----(교통행정과)

- 자동차운수사업체 : 4,507개소
- 건설기계사업체 : 596개소
- 자 동 차 등록대수 : 131,235대
- 건설기계 등록대수 : 16,855대

교통시설물 현황 : 574개

- 도로안내표지판 : 410개
- 보행자안내표지판 : 72개
-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 92개

주차장관리 현황 -----(교통지도과)

- 주차장현황 : 7,844개소 106,817면
 - 공영 2,407면, 민영 6,891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8,184면
 - 건축물부설주차장 89,103면, 내집주차장 232면

□ 자동차관리업체(정비업,매매업) 현황

- 정비업체 : 종합정비업 22, 소형정비업 13, 부분정비업 240,
원동기전문정비업 4
- 매매업체 : 37개소

□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사 업 비			경상비	비 고
		소계	구비	시비		
계	46,049	41,669	14,681	26,988	3,968	412
건설관리과	759	336	336		423	
토 목 과	16,931	15,940	7,430	8,510	991	
치 수 과	27,345	24,994	6,516	18,478	1,939	재해대책기금 412
교통행정과	736	395	395		341	
교통지도과	278	4	4		274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사 업 비			경상비	비 고
		소계	구비	시비		
계	37,808	32,273	31,908	365	5,535	
교통행정과	21,892	21,794	21,429	365	98	구비 주차장 건설포괄비 : 18,737 기타 : 2,692 시비 : 그린파킹사업비
교통지도과	15,916	10,479	10,479		5,437	구비 공단대행사업비 : 6,165 견인료 : 2,486 CCTV설치 : 813 주차시설용자금 : 1,000 기타 : 15

●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건설관리 강화로 깨끗한 도시공간 확보

내실있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삶의 수준향상 도모

완벽한 수방으로 재해없는 치수 구현

체계적인 교통행정으로 주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적극적인 교통지도로 생활불편요인 해소 강화

□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실천과제

건설관리과

- 공공용지 관리기능 강화로 세수증대
- 가로정비 적극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 광고물관리 및 정비 지속추진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유지

토 목 과

-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지속 추진
-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도로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조성

치 수 과

- 하수배제의 원활화로 침수지역해소 및 안전한 생활에 기여
-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으로 수해없는 영등포구현
- 주민과 함께하는 펌프장관리로 방재시설 신뢰성 제고
- 지하수 관정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지하수 유지

교통행정과

-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및 근린파크 사업추진으로 주차공간 확보
- 교통시설을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 맑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의 교통민원 서비스 제공
- 불법 주기단속으로 준법질서 확립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주차질서확립
- 자동차정비업 등록업무 개선시행
- 원활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주차장의 효과적인 관리로 부설주차장 이용률 거양

2005 주요업무보고

2005. 3



건설관리과

보고 순서

●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 특수 시책사업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I . 2005 주요업무추진 계획

1 도로 및 구거부지 무단점유 일상점검 실행

건물주, 점포주 등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상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상습 점유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도모

□ 공공용지 현황

계	도 로	하 천	구 거
2,547건	2,369건	39건	139건

□ 점 검 대 상

- 도 로 : 주택·점포 등의 계속점유 적정여부
- 구거(하천) : 부과누락, 면적초과, 명의변경, 폐쇄처분 등

□ 점 검 방 법

- 기동단속반이 가로환경순찰 및 일상점검
- 유관부서의 허가 통보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점검
- 공공용지 현황측량 등으로 숨은 재원 적극발굴

□ 무단점유자 조치

-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 고질·상습자는 도로법에 의거 고발

2

세외수입 징수 강화□ **현년도 세외수입 증대 도모**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목표)	징수율(%)
계	4,281,777	4,116,357	96.13
도로점용료	3,177,647	3,051,341	96.02
하천점용료	136,259	129,445	94.99
임대 수입	18,032	18,032	100
과 태 료	132,000	104,200	78.93
이행강제금	15,000	10,500	70
징수교부금	802,839	802,839	100

- 도로 및 구거부지 등 무단점유 일상점검 확행으로 세수증대
-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으로 숨은 자원 적극 발굴
-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 일제조사 철저 시행
 - 년3회이상 일제조사 실시
 - 1차 : 2005. 1월 ~ 3. 31(점용료 정기부과)
 - 2차 : 2005. 4월 ~ 6. 30(사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 3차 : 2005. 10월 ~ 12.31(변상금 정기부과)
 - 조사결과 조치
 - 무단시설물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 허가면적 초과 사용은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병행
 - 시설물 파·훼손자는 고발 등 행정조치

□ **현년도 체납정리 일소강화**

- 체납건별 현장조사 및 주민등록 실사를 통해 소재파악 확인
-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집중관리

3 전문건설업 및 골재채취업업체 지도감독강화

전문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자본금 증액 등 법개정으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소재한 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도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리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 및 골재채취업법

대상업체 현황 -- 621개업체 1,021개업종

전문건설업체		골재채취업체	
업체 수	업종 수	업체 수	업종 수
606	996	15	25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된 주요 내용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 증액
- 철도·궤도 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사후관리

- 자본금의 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각 대상업체에 안내문 발송
- 갱신신고 미접수업체와 강화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소재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무단전출 및 미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4 가로환경정비 기능유지 강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비·감축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중점관리대상

총 계	노 점			기타 지역 노상적치물
	소 계	절대금지	상대금지	
2,098개소	517	65	452	1,581

□ 정비방향

- 노점의 규모, 형태, 장소별 차별화하여 정비대상 지정관리
- 절대금지구역내의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우선 집중 실시
- 노점상 상담 전업지원 센터 활성화 및 대시민홍보 실시

□ 중점 정비지역

- 보행불편 심화지역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거장, 지하철역 출입구, 시장입구 등의 절대금지구간내의 기업형, 대형노점 및 안전위해 노점 등
- 민원다발 집중 지역 : 시민불편신고, 인터넷신고, 순찰지적지역 등

□ 정비개선 방향

- 중점 정비지역 특별상시 관리
 - 대상 : 영일·조광시장, 여의도, 삼각지 등 단속 취약지역
 - 인력 : 단속반원 및 용역원 활용(용역비 : 158,331천원)
- 노점(포장마차) 이용안하기 등 대시민운동 전개로 홍보 강화
- 야간, 새벽 단속강화로 마찰(충돌) 최소화(월8회이상)
- 생계형 노점상은 사전정비 계도를 통하여 강제수거 최소화
- 기업형, 대형노점 및 고질·상습 위반자는 과태료, 벌상금, 고발병행
- 취약지역 선정 특별정비계획수립 용역 집중투입 정비효과 극대화

5 영일·조광시장 특별 정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됨에 따른 가설물 자진철거 및 보·차도상의 만성적인 물품적치로 시민의 보행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비로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량소통의 원활화 도모

□ 현 황

- 정비구간
 - 열린우리당 ~ 건양병원 ~ 인공섬부근(455m)
 - 인공섬부근 ~ 흥플러스옆(504m)
- 정비대상 : 1,271개 점포 (영일 779 조광 492)
- 정비기간 : 연중
- 정비인력 : 26명(공무원 16명, 용역원 10명)

□ 중점 정비대상

- 보·차도상 상품적치, 파라솔, 이중차광막 등 설치행위
- 차상판매인, 차도상 핸드카, 손수레 방치행위, 보도상 상행위 등

□ 정비방법

- 대상점포주에게 정비안내 사전통지 및 계고장 발부
- 상인연합회를 통하여 기존 차광막 자진철거 및 차광막 규격을 1m 이내로 축소유도(현재 규격 : 1.5m ~ 2m)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한 가건물은 영업폐쇄 등 집중관리

□ 향후 조치

- 차광막 자진 미철거 및 축소 미정비시 강제철거 등 정비
- 영일시장 주변도로 상거래행위, 불법주차, 무단투기행위 등 기능별 합동단속반 지속적 운영
- 영일시장 가건물 단계별 정비 - 도로기능 회복
- 상습·고질적인 점포주는 과태료, 변상금부과 및 고발병행

6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점 관리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안전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물 현황 : 총 240개소

- 가로판매대 86, 교통카드판매대 42, 구두수선대 112

□ 시설물 관리

○ 전기안전 점검실시

- 일 시 : 2005년 5월경
- 대 상 : 가로판매대 86개소
- 소요예산 : 3,612천원(42,000원 x 86개소)

○ 가로판매대 도색실시

- 일 시 : 2005년 5월경
- 대 상 : 40개소(구형 가로판매대)
- 소요예산 : 4,000천원(100,000원 x 40개소)

□ 시설물 점검

○ 상시점검 체제 구축 : 년 4회(분기1회)

○ 중점 점검 사항

- 전대·전매, 허가장소 임의변경, 시설물 구조변경, 음식물 조리행위여부
- 허가 면적 이외 장소에 상품 및 기타 물건적치·금지품목 판매행위 등

○ 위반자 행정조치

- 허가면적 초과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 동일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 적발시 허가 취소
- 허가 취소된 영업시설물의 강제철거

7

광고물 수준향상 및 안전점검 확행

대형·난립으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업자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도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옥외 광고업자 정기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310명('05. 2. 28현재)
- 교육 시기 : 2005년 10월~11월
- 교육 방법 : 한국교육사업협회에 위탁교육
- 교육 내용 : 광고물 관련 법규 및 광고업자 준수사항 등
- 불참자 조치 : 과태료 부과(1인당25만원) 등 조치 후 보수교육 실시

옥외 광고업자 일제정비

- 정비대상 : 무신고 광고업자 및 무단 폐·휴업후 신고 미이행자
- 정비시기 : 2005년 10월~11월
- 정비방법
 - 무신고 광고업자 :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불응시 고발
 - 무단 폐·휴업자 : 단계별로 영업정지후 불응시 영업폐쇄조치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미만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3차위반 : 영업폐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본심의
 - 심의대상 : 우리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형 광고물
 - 심의위원 : 8명(당연직 소관국장 포함 3명, 위촉직 5명)
 - 개최횟수 : 년12회(매월 1회)

○ 소심의

- 심의대상 : 관내 4차선이상 지역 및 여의도 전역에 설치되는
간판중 본심의에서 위임된 소형 광고물
- 심의위원 : 3명(당연직 소관과장 1명, 위촉직 2명)
- 개최횟수 : 년50회(매주 1회)

□ 현수막지정계시대 안전점검 및 보수

- 점검대상 : 지정계시대 36개소(165면)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전문기관(한국광고사협회)에 의뢰 조사
- 점검기간 : 2005. 6.25 ~ 6.30
- 보수일정 : 2005. 7. 1 ~ 7.10
- 사후관리 :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여부 수시 확인 조치

□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 점검대상 : 대형옥상광고물 54개
- 점검방법 : 광고주, 안전점검요원 직원 등과 합동조사
- 점검기간 : 2005. 6. 25 ~ 7. 25(1개월)
- 사후관리 : 안전점검에 문제점이 있을시 광고주에 즉시 보수 토록 지시

8

불법광고물(고정, 유동) 정비□ **현 황**

구 분	정비물량	정비대상	용역비	비 고
고정광고물	3,500건	무허가(신고), 표시위반광고물	70,000천원	
유동광고물	8,000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68,800천원	

□ **정비방법**

- 불법고정광고물 : 자율정비유도 및 구 기동반과 용역활용정비
- 불법유동광고물 : 공공근로자 및 노인 등 활용정비
 - 추진기간
 - 노 인 : 2005. 2. 1 ~ 12. 31
 - 공공근로자 : 2005. 4. 1 ~ 12. 31
 - 정비인원 : 88명
 - 노 인 : 44명(동별 2명)
 - 공공근로자 : 44명(동별 2명)
 - 추진방법
 - 22개동사무소에 노인 및 공공근로자 각 2명씩4명을 1개조로 불법광고물정비 전담반으로 배치
 - 사회복지과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업무추진
 - 1일작업 지시 및 실적관리로 정비의 효율적 추진

□ **정비개선 방향**

- 사전 충분한 안내 및 홍보로 자율정비 유도
- 사업주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및 홍보책자 발간하여 배부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등 민원발생 최소화에 중점

9

학교주변 클린존 지속 정비

거리환경은 물론 청소년 정서에 해악이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소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청소년유해 불법 음란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정비지역

- 관내 16개 학교주변 통학노선
- 학교중심 반경 500m 이내
- 주택가, 청소년 다중 출입지역 등

정비대상 : 청소년 유해 불법음란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기간 : 상시 정비관리

정비방법

- 구기동반, 공공근로인력에 의한 순회 관리(정비)
- 자기학교 주변 자율정비를 위한 학생봉사활동 참여 유도
- 주 2회이상 새벽 및 야간 특별단속 실시
- 동사무소 취로인부 활용 제거
- 경찰협조로 청소년 유해광고물 배포자 현장 합동단속 등

위법행위 예방 조치

- 현 수거(제거)방법과 병행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 지역신문,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 홍보

Ⅱ. 특 수 사 업

1 폐 현수막 농촌 재활용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수거된 폐현수막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투입하여 잡초제거용 등으로 사용토록하여 자원 재활용 및 처리비용 절감코자 함

□ 추진방법

- 폐 현수막 재활용 홍보
 - 신문, 방송(인터넷방송), 반상회보 등
- 폐 현수막 사용 농촌지역 선정
 - 1차 선정(2005. 2월)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소재 과수원
- 일일 수거된 현수막 제공

□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05. 2. 1 ~ 12. 31
- 사업내용
 - 폐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잡초 제거용으로 사용
 - 현수막의 막대를 농작물의 지주용으로 사용

□ 사업효과

- 예산절감 효과 : 43,200천원
 - 1일 폐 현수막 수거량 1톤(1개월 약20톤)
 - 톤당 폐 현수막 처리비용 : 180,000원
 - 절감액 : 20톤 X 180,000원 X 12개월 = 43,200천원
- 자원 재활용으로 농촌 지원사업 활성화

2

영등포구 좋은간판 선정 시상계획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좋은간판 작품을 공모하여 선정·시상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와 우수광고물 제작설치를 유도하여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 현 황

- 우리구의 총17,500여개의 광고물중 허가(신고)는 10,853건 이며 약 38%에 해당하는 6,650여개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음
- 도시경관을 무시한 화려하고 저가의 광고물을 선호하는 시민의식
- 옥외광고업자의 난립으로 광고물의 수준 저하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5년 1월 ~ 년중 사업
- 추진대상 : 관내 허가(신고) 신청 및 기 설치된 허가(신고) 광고물중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에 한함
- 추진방법
 - 2005년10월까지의 사전 심사 광고물중 심사위원이 선정한 광고물과 10월 한달 동안 공모 접수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심사
 - 좋은간판 선정 심사는 광고물심의위원(8명)이 심사
 - 시상대상은 광고주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옥외광고업자(디자이너)중 18명을 선정(금상2, 은상4, 동상6, 장려상6)
 - 2005년 11월중 심사후 시상하고 12월 중 본관1층 로비 전시

□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시민의 인식제고
-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경관 수준 향상
- 옥외광고업자의 광고물 제작 수준 향상

3 옥외광고물제작 실명화 추진계획

옥외광고물의 실명화로 광고물 수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디자인 등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 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 현 황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건수 : 10,853건
- 광고업자 신고수 : 310명

□ 현실태 및 문제점

-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려는 욕구 팽배
- 무허가(신고) 광고물설치 제작업자의 난립
- 저렴한 가격의 간판을 선호하는 광고주의 무허가(신고) 광고물설치 제작업자 선호
- 건물의 임대규모의 소형화로 입주업체의 간판 난립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5년 1월 ~ 년중 사업
- 추진대상 : 신규허가(신고) 및 도안변경 광고물(기간연장 제외)
- 추진방법
 -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에 공한문 발송 실명화 권장사업 협의
 - 타 시도 광고업자는 광고물설치 신고시 실명화 표시 권고
 - 광고업자 교육시 서울시의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광고물을 리후렛 제작배부 및 실명화 제도 홍보
 - 실명화 제도의 효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 추진

□ 효 과

- 광고업자의 광고물 제작 수준 향상 및 좋은간판 홍보 효과
- 지역 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경관 수준 향상
- 광고주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제고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 번호	제목	감사지적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고
사회 건설 -5	불법 광고물 철거	고정광고물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많으나 수납징수율이 19.5%로 실적 저조하며 유동성 광고물 단속 현황도 건수와 금액은 많으나 수납 징수율이 약12%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지역주민의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바람.	건 설 관리과	○ 조치사항 (조치완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2005년도에는 지역주민의 경제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에 시정지시하는등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상습.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도록 하겠음	조치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 번호	제목	감사지적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 고
사회 건설 -11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철저	2004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율이 현년도는 87%이고 과년도는 10% 내외로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대상자는 소재불명, 고질적 체납자, 채권확보 불능자 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10% 내외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건설관리과를 포함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구청 각 부서는 체납대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소재지확보, 재산압류 물건확보 등의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분징수율을 높이기 바람.	건설관리과 외 세외수입 관리부서	○ 조치사항 (조치완료) -주민등록번호 착오 및 미등록 체납자에 대하여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로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의 소재 파악하여 지속적인 체납고지 -착오 부과로 인한 체납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건물신축, 도로 개설, 명의변경 등에 따른 도로 사용변상금 체납 자료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재 부과 또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자료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2004년 12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 등 주기적인 체납자 재산조회로 압류 확행 -허가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년도분의 착오 부과로 인한 체납방지 및 부과 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분의 다음 해 이월을 최소화함	2004년 10월 과년도 세외수입체납관리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과년도 체납관리 업무 주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 번호	제목	감사지적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고
사회 건설 -24	관내 차량 출입시설 전수 조사 및 관리철저	2004 기준 관내 차량출입시설의 건 수는 총 1,196건에 2,191,346천원이나 실제 관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차량출입시설 이 이 보다 더많은 형편임	담당부서에서는 불법 차량출입시설 에 대한 보다 정확 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기존에 합법적 으로 허가받은 시설 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 며 차량 출입 시설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 설 관리과	○ 조치사항 (조치완료)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총 26개 소에 대하여 2005.1.15한 자진정비 계고하여, 이후 자진정비 11개소와 허가 1개소로 처리하였으며, 나머 지 14개소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하겠으며 앞으로도 신발생 불법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조사계 획을 수립사행, 과태료·변상 금 부과 및 상습·고질 업주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병행하여 준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 겠음	조치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 번호	제목	감사지적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고
사회 건설 -30	형평성 있는 단속 및 단속원 공직기강 철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가로정비, 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등은 실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보다 경미하고 단속활동이 용이한 곳 위주의 단속과 단속의 질적인 측면보다 실적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단속원들의 단속에 임하는 자세 및 근무기강도 해이하여 단속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부정 단속에 개입되는 경우도 있음	단속행위를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단속 효과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 복무기강 확립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 설 관리과	○ 조치사항 (조치완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노점, 광고물의 증가로 단속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후에는 지역실정, 단속 효과등을 감안 단계적인 정비로 내실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단속과정에서 부정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치 완료